

판매제휴계약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계약서

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2012년 3월 2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1) 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_____
_____에 본점 사무소를 둔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 및
- (2) 대한민국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에 본점 사무소를 둔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

- 다 음 -

제1장 총칙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하게 달리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상 본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이란 갑과 을 각자가 보유한 역량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갑의 고객을 대상으로 갑의 판매망을 통하여 을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 “판매제휴관계”란 당사자들간에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포괄적인 업무제휴 관계를 의미한다.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이란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갑에 의한 판매가 허용되는 을의 보험상품 중에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기로 확정된 을의 상품을 의미한다.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계약”이란 갑이 을의 보험대리점으로서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 의거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5. “고객정보”란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식별정보 및 본 판매제휴관계를 통해 체결된 보험거래정보를 의미한다.
6. “관련법규”란 본 판매제휴관계를 규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등을 총칭한다.
7.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의 합당한 주의로써 회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 전쟁, 화재, 폭발, 정부 당국의 정책변경 등 정부조치 또는 노조의 파업이나 직장 폐쇄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 ① 본 계약은 갑이 을의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을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갑·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계약과 개별계약 상호간에 모순이 있거나 그 내용이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보다 우선한다.
- ③ 갑과 을은 판매제휴관계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할 수 있다.
 - 1. 상품 및 수수료에 관한 부속계약
 - 2. 표준업무처리기준에 관한 부속계약
 - 3.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

제2장 판매제휴업무

제3조 판매제휴업무의 범위

갑과 을은 판매제휴관계를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이하 “판매제휴업무” 또는 “제휴업무”라 한다)를 상호 협조 하에 수행한다.

- 1.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개발
-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마케팅 및 판촉
-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판매를 위한 교육 및 판매지원
-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판매
-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계약의 관리, 계약자 서비스 개발 및 시행
- 6. 본 계약 및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한 업무

제4조 갑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

갑은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을의 보험대리점으로서 을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의 대리
2. 보험료의 수령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계약의 연체 및 실효 방지를 위한 계약 관리
4. 부활계약 체결의 대리
5. 청약철회, 불완전판매 및 계약관련 민원 접수
6. 모집한 보험계약내용 조회 및 안내
7. 판매직원에게 대한 지속적인 교육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적정 인력 및 시설의 확보
9. 보험계약 관련 개인정보보호업무
10. 기타 보험대리점의 일반적 업무로서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업무

제5조 을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

을은 갑이 을의 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한 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개발 및 제공
2. 보험계약의 심사, 인수 및 승낙
3. 리스크 관리
4. 보험금청구 심사 및 지급
5. 갑의 판매직원에게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 특성, 판매기법 등 교육 및 마케팅 지원
6. 보험계약 실효예정 통지, 제 증명서 발행, 유지계약의 상담 등 고객 관리업무
7. 관계 법규에서 정한 재무건전성(지급여력비율 등) 유지
8. 기타 상품개발과 판매력 증대를 위해 양측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

- ① 갑과 을은 판매업무의 세부적인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표준업무처리기준”을 개별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대리시의 업무방법 및 절차
2. 보험계약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관리 업무
3. 민원처리를 포함한 고객서비스 업무
4. 판매업무와 관련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하는 업무
5.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 등의 지급신청 접수 대행에 관한 업무
6.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항

② “표준업무처리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계약의 모집,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업무

- ① 갑은 보험 모집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수령,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 안내, 유진단계약의 진단안내,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보험청약서 부분(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교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서」 징구 및 관리 등을 직접 하여야 한다.
- ② 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계약의 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직접 수납할 수 있으며,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의 경우는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합의 하에 보험료 수납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갑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의 위임에 의해 다음 각호의 지급신청 접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고객의 청약철회 또는 거절로 인하여 을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반환하는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 대출금, 사고보험금 등
- ④ 지급신청 접수업무 대행은 신의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갑이 관련법규와

“표준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3장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 및 수수료

제8조 판매대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

- ① 갑은 을의 보험상품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판매할 수 있다.
- ② 갑이 판매할 수 있는 을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범위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한다.
- ③ 을은 갑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폐지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폐지일 또는 변경일의 15영업일 전까지 동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신규상품 또는 개정상품을 갑에게 공급한다.

제9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개발 및 선정

- ① 상품의 개발은 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갑의 원활한 상품판매를 위하여 을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신속히 갑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 ② 갑은 을에게 판매희망상품을 문서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요청한 상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판매상품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상품의 브랜딩

- ① 갑과 을간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브랜드는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본 계약에 의거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방이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브랜드에는 갑과 을을 상징하는 문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브랜드 형태는 고객선호도, 판매용이성, 채널 및 상품의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수수료 등

- ① 을은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의 본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상품의 판매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 ② 갑과 을은 언제든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수수료 등의 산출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요청 받은 자료를 제공한다.
- ③ 수수료의 종류, 산정기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판매지원

제12조 판매지원

- ① 을은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갑의 본 계약에서 정한 판매제휴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최선의 지원을 한다.
- ② 갑과 을은 각자 또는 공동으로 마케팅, 홍보, 판매촉진 등(이하 “마케팅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 ③ 을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마케팅 등을 위한 보험안내자료, 약관 등 각종자료를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상품판매 전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 ① 갑과 을은 효과적인 판매제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자료개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평가, 교육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상호 협력한다.
- ② 을은 갑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 판매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지위 및 보험모집 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 ③ 을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 판매와 관련된 교육과정 및 자료를 개발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 ④ 갑과 을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 판매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서로의 시설 및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 장소, 교육내용 등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전산시스템 운영

- ① 갑과 을은 각자의 비용으로 판매제휴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6조에 의한 기간까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기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상호간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민원 및 부실모집 처리

- ① 갑과 을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완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판매 및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제도적 관리감독을 이행한다.
-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의 민원관련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처리 종결된 민원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각각 상대방에게 처리경과 및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고객정보의 이용 및 보호

제16조 고객정보 이용

- ① 갑과 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정보(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정보)는 을이 보유하며, 계약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의 권리도 을에게 있다.

제17조 고객정보 보호

- ① 갑과 을은 고객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에 필요한 각자의 조치와 교육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필요시 상대방에게 고객정보 보호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일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갑과 을은 별도 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제6장 계약의 변경, 효력, 해지 등

제18조 계약의 변경 및 추가

- ① 본 계약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본 계약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된 계약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및 기한

- ① 본 계약은 2012년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1항 본문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응당일 까지로 한다.
- ③ 본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기간 종료일 6개월 전 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의 효력은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

- ⑤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 ①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 2.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 3.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4. 불가항력으로 인해 본 계약상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 5.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6.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인허가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 계약이전의 결정, 또는 적기 시정조치 등을 받음으로 인해 다른 상대방의 영업 및 평판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해지의 효력은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 발생한다.
- ④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금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기타 책임이나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⑥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존속되어야 하는 본 계약의 조항은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제21조 불가항력

-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지연·방해 받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지체없이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을 초래한 사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불가항력을 피하거나 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태에 기인한 의무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계약종료 후 후속조치

- ① 본 계약이 해지,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기밀정보, 교육 자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 보험안내자료 및 기타 물건 및 권리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사용이 허용된 상대방의 상표, 로고, 상호, 기타 권리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고객정보, 미지급 수수료의 정산, 기타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운용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장 일반사항

제23조 통지

- ①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통지와 기타 연락은 전자문서로 송부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인편으로 배달되거나, 택배서비스, 팩스 또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당사자에게 다음 주소지(또는 당사자가 달리 명시하여 지정한 주소지)로 송부되어야 한다.

< 갑 >

주소 : _____

담당 : _____

전화번호: _____

팩스번호 : _____

< 을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1-1

담당 : 농축협사업부 계약담당

전화번호: (02) 3786 - 7306

팩스번호: (02) 3786 - 7310

- ② 갑과 을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소통은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수령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실제 수령시간이 통상적인 영업시간 이내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 통상적인 영업시간이 개시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 비밀 유지의무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판매제휴관계에서 제공 또는 습득되는 비밀 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와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보호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를 공개당사자로부터 수령하기 전에 수령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2. 정보가 공개당사자의 서면동의 하에 공개되는 경우
3. 수령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경우
4. 비밀정보와 독립적으로 수령당사자에 의하여 개발된 정보
5. 감독당국, 사법기관,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한 경우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제공이 강제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요구 또는 제공의 강제가 있는 경우 수령당사자는 이를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비밀유지 조항의 위반으로 초래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제26조 면책 및 손해배상

- ① 갑과 을은 그 대표, 임직원, 피고용인, 컨설턴트, 대리인, 계약자, 수급인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본 계약상의 의무반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관계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된 경우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자를 면책시키는 한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제1항 및 본 계약위반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간에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 기타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갑 또는 을이 타 법인에 인수합병 되거나, 정부감독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계약이전 등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인수 또는 이전된 회사에 승계된다.
- ④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구행위로 간주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원본을 작성하고, 그 정당한 대표자가 본 계약에 각각 서명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 3. 2.

(갑) 주 소 : _____
농·축협 : _____
조 합 장 : _____ (인)

(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동 민



상품 및 수수료에 관한 부속계약서

상품 및 수수료에 관한 부속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2년 3월 2일 체결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품 및 수수료에 관한 부속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 ① 수수료의 종류, 지급방법 등 지급기준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② 신상품의 개발, 상품의 개정, 유지율의 현저한 변동 등 수수료 지급 기준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

- ① 수수료란 기본계약에 따라 갑이 을의 보험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모집수수료와 계약유지수수료로 구분된다.
- ② 모집수수료란 신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예정신계약비(a, a_1)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계속보험료 입금여부에 따라 상품별로 12회차에서 36회차까지 지급한다.
- ③ 계약유지수수료란 연금·저축성 상품의 계약유지에 대한 대가로 예정신계약비(a_2)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계속보험료 입금여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7년)까지 지급한다.
- ④ 초회보험료는 을이 승낙하여 성립된 보험계약의 제1회보험료를 말한다.
- ⑤ 계속보험료는 성립된 계약의 2회차 이후 보험료를 말한다.

- ⑥ 선납보험료란 수회차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해당월 전에 미리 입금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지급률)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상품별 모집수수료 및 계약유지수수료의 지급률은 을이 별도로 전자문서 또는 공문을 발송하여 통지한다.

제4조 (수수료 지급기준)

- ① 수수료는 보험료가 입금되는 익일에 지급한다.
- ② 납입방법이 3월납은 3개월분 수수료, 6월납은 6개월분 수수료, 연납은 12개월분 수수료, 일시납은 수수료 전액을 보험료가 입금되는 익일에 지급한다.
- ③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가 부활처리되는 경우 보험료 미납 후 부활처리된 기간 동안의 수수료는 부활 승낙된 익일에 일시 지급한다.
- ④ 제수수료 계산에 있어 계약건별 수수료 금액 계산시 “원”미만 절사한 후 합산금액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 ⑤ 보험료 할인 시의 수수료는 할인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⑥ 계약변경에 따른 납입보험료 변경 시의 수수료는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⑦ 을은 수수료의 환급절차, 사유, 방법 등에 관하여 갑과 다른 모집종사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⑧ 신상품의 개발 및 상품의 변경 등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수수료를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지급방법)

을은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6조 (수수료 지급기간)

- ① 수수료 지급기간은 초회보험료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② 판매제휴기간 동안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판매제휴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계약 종료 또는 해지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기간은 당사자들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수수료의 환수)

- ① 갑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수취한 모든 수수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 품질보증 해지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미이행,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미수령,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 미비 등으로 이의제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에 의해 해지된 계약
 - 2. 수수료가 지급된 계약 중 청약철회를 한 계약
 - 3. 무효계약

성립된 계약 중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처리된 계약
 - 4. 일반 해지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
 - 5. 민원 해지계약

불완전판매계약으로 판정되어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취소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한 경우
- ② 반환금액은 익일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상계하여 정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기타)

- ① 신상품의 개발, 상품의 개정 등으로 인해 제1조에 따라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지급률 등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은 변경 후 체결된 신계약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② 위 ①항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으로 인한 수수료 지급기준 및 지급률 등의 변경사유 발생시 갑과 을이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을의 대표자 명의의 전자문서 또는 공문 발송으로 같음한다.

제9조 (보칙)

- ① 본 부속계약서는 2012년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부속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원본을 작성하고, 그 정당한 대표자가 본 계약에 각각 서명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 3. 2.

(갑) 주 소 : _____
 농 · 축협 : _____
 조 합 장 : _____ (인)

(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동 민



표준업무처리기준에 관한 부속계약서

표준업무처리기준에 관한 부속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12년 3월 2일 체결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준업무처리기준에 관한 부속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판매 전 준비사항

제1조 (자금수수)

- ① 갑은 을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거나 을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지급금(보험금, 배당금, 환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을에 대한 미지급 채권·채무계정으로 기표하고 익영업일에 이를 일괄정산한다. 이 경우 갑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시점 및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제지급금을 지급한 시점에 그 수령 및 지급의 효과는 갑에게도 미친다.
- ② 을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①항의 자금거래를 정산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별도의 법인계좌를 각각 개설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을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별도 협의한다.

제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 ① 갑과 을의 전산시스템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개

선할 경우, 을은 갑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갑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갑의 시스템과 연결하며, 필요시 갑과 을은 시스템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양사의 시스템을 보완한다.

- ③ 갑과 을은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정보보호를 위해 판매개시 전에 이에 대해 상호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④ 갑과 을은 갑의 보험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각각 자기의 비용으로 구축하며, 갑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전산 구축비용, 프로그램의 구입·유지·관리비용 등은 갑이 부담하고 전산비용 중 회선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 (문서수발체계 구축)

- ① 갑과 을이 협의하여 문서수발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을은 각종 문서의 수발을 위해 갑의 본점과 을의 본점을 왕래하는 행낭을 개설한다.
- ② 갑은 갑의 비용으로 각 지점과 본점 간의 문서수발체계를 구축하며 이의 운영을 위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갑의 본점과 을의 본점 사이에 제공되는 문서수발비용은 발송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수령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상품 개발 및 판매상품 선정)

- ① 상품의 개발은 을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갑의 원활한 상품판매를 위하여 을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신속히 갑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 ② 갑은 을에게 판매희망상품을 문서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요청한 상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판매상품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교육 및 비용부담)

- ① 갑과 을은 갑의 보험판매인이 을이 제공한 보험상품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에 대해 협의한다.

- ② 을은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보험업감독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판매촉진 등의 물류비용, 모집직원 교육비용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장 신계약

제6조 (가입설계서)

- ① 을은 가입설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 ② 갑은 을이 제공하는 가입설계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가입설계서를 출력한다.
- ③ 을은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약서)

- ① 신계약의 청약을 위한 청약서는 을이 승인한 청약서 양식을 통하여 갑이 전산시스템으로 인쇄하여 사용한다.
- ② 청약서는 각 2부를 출력하여 각각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득한 후 1부는 계약자에게, 1부는 청약상 필요한 서류와 함께 즉시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게 송부하고 원본은 갑이 보관한다.
- ③ 갑은 을이 청약서 원본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를 열람케 하며, 필요시 복사본(이미지 파일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 (건강진단)

- ① 을이 피보험자에게 계약심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요구한 경우, 갑은 피보험자에게 을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을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서는 갑을 경유하지 않고 병·의원이 을에게 직접

전달한다.

-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할 상품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을 신상품 판매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초회보험료의 납입)

- ① 초회보험료의 납입은 갑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을의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는 다른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계약자가 현금납입을 원할 경우에는 갑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처리하고 고객에게 갑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다.
- ③ 갑이 발행한 영수증은 을의 영수증으로 갈음하며, 을의 책임개시 시점은 각 보험상품의 약관별 책임개시시점으로 한다.

제3장 계약심사

제10조 (자동심사)

갑이 판매할 을의 보험상품은 자동심사와 인수승인심사로 분류하고, 자동심사는 즉시 그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인수승인심사)

- ① 갑이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 을은 청약일(건강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청약일(건강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보험계약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이나 추가가 필요한 경

우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계약자가 가능한 빠른 경로를 통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심사기준)

을은 갑이 모집하는 계약에 대하여 인수기준, 진단기준, 부담보기준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를 통한 보험계약과 차별적으로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갑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계약적부 확인)

을은 갑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적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갑에게 통보한다.

제14조 (보험가입증서 및 보험료 거래장의 발행)

- ① 갑은 계약성립일(자동심사의 경우 즉시)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이 정한 양식의 보험가입증서를 발행하여 계약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계약자가 요청한 보험가입증서 수령처로 발송한다.
- ② 계약자가 보험가입증서의 분실 또는 미수령으로 재발행을 갑에게 요청할 경우 갑은 서류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이 정한 양식의 보험가입증서를 재발행하여 계약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계약자가 요청한 보험가입증서 수령처로 발송한다.
- ③ 보험료 거래장의 경우 보험가입증서의 발행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 (거절)

- ① 을은 갑이 판매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를 하고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을이 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해당금액을 입금한다.

제16조 (청약철회)

- ① 갑이 판매한 보험상품을 가입한 계약자가 갑을 통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접수를 하며, 계약자의 청약철회 의사 표시 접수일은 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서에 서명하여 갑에게 제출한 날이며 이는 우체국의 접수소인 날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갑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 전산시스템에 청약철회신청을 입력하며, 접수서류는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게 송부하고 원본서류는 갑이 보관한다.
- ③ 을은 갑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입금하고 이에 대하여 갑에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통보한다.

제17조 (품질보증)

- ①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로 갑의 영업점에서 계약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갑은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전산시스템에 품질보증해지신청을 입력하며, 접수서류는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게 송부하고 원본서류는 갑이 보관한다.
 - 1. 계약자에게 약관 또는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 계약 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을은 전산상 접수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 상품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계약자의 계좌에 반환하며, 갑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한다.
- ③ 을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장 부활

제18조 (부활청약서)

- ① 부활의 청약을 위한 청약서는 을이 승인한 청약서 양식을 통하여 갑이 전산시스템으로 인쇄하여 사용한다.
- ② 청약서는 각 2부를 출력하여 각각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필요한 서명을 득한 후 1부는 계약자에게, 1부는 청약상 필요한 서류와 함께 즉시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게 송부하고 원본은 갑이 보관한다.
- ③ 갑은 을이 청약서 원본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를 열람케 하며, 필요시 복사본(이미지 파일 포함)을 제공한다.

제19조 (부활보험료의 납입)

- ① 부활보험료의 납입은 갑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을의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는 다른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계약자가 현금납입을 원할 경우에는 갑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처리하고 고객에게 갑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며 이를 을의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20조 (부활계약의 심사)

부활계약의 심사는 신계약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장 계속보험료 납입

제21조 (계속보험료의 납입)

- ① 2회이후의 계속보험료는 자동이체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는 다

른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계약자가 직접 보험료의 입금을 원할 경우 갑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입금하고, 갑은 영수증을 발행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제22조 (보험료 납입계좌의 변경)

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자동이체계좌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접수자(갑 또는 을)는 이를 변경처리하고, 상대방(갑 또는 을)에게 통보한다.

제23조 (계약의 갱신)

- ① 을은 보험계약의 만기일 1개월 전 영업일까지 갱신대상계약의 전산리스트를 갑에게 송부한다.
- ② 을은 계약자에게 갱신안내장을 발송하여 계약자가 갑의 영업점에서 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갱신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갱신계약에 대한 심사는 신계약에 준하되, 계약내용 및 인수기준의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하여 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계약 변경

제24조 (연락처 변경)

- ① 계약자가 갑을 통하여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포함 등)변경을 요청할 경우 갑은 갑의 전산시스템에 이를 반영하고 이를 전산상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 ② 을도 계약자가 을을 통하여 본인의 연락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을의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전산상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제25조 (계약내용의 정정 및 변경)

- ① 계약자가 계약내용의 정정 및 변경을 갑에 요청한 경우 갑은 고객에게 청구서류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를 안내하고, 실명확인을 한 후 완결된 청구서류를 접수한다.
- ② 갑은 서류 접수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계약내용의 정정 및 변경 처리 후 접수서류를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게 전송하고 원본서류는 갑이 보관한다.
- ③ 을의 정정 및 변경의 책임개시는 갑이 접수서류를 이미지시스템에 등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갑의 을에 대한 통지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을 또는 계약자 등의 손해는 갑의 책임으로 하고 을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④ 계약내용의 정정 및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을은 이 내용을 즉시 갑과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액이 발생할 경우 갑은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즉시 입금계좌에 입금한다.
- ⑤ 계약내용의 정정 및 변경이 완료된 경우 갑은 보험가입증서에 배서하거나 재발행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 ⑥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장 지급

제26조 (제 지급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확인)

- ① 을은 갑이 계약자의 요청으로 제지급금 및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갑은 계약자가 이의 조회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알려줄 수 있다.

제27조 (사망 및 사고보험금 지급)

- ①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보험수익자가 갑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갑은 정당한 보험수익자임을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방법을 안내한다.
- ② 갑은 서류 접수 즉시 이미지시스템에 사고접수 입력 및 접수증을 발행하고, 접수서류를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게 전송하며 원본서류는 갑이 보관한다.
- ③ 을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보험수익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④ 고객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 (만기환급금, 연금, 중도보험금 등 보험금 지급)

- ① 보험수익자가 갑에게 만기환급금, 연금, 중도보험금 등(이하 “만기환급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갑은 고객에게 청구서류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를 안내하고, 실명확인을 한 후 완결된 청구서류를 접수한다.
- ② 갑은 서류 접수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험수익자가 지정한 계좌로 만기환급금 등을 지급하고, 접수서류를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게 전송하며 원본서류는 갑이 보관한다.

제29조 (해지환급금, 배당금,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 ① 계약자가 갑에게 계약의 중도해지, 배당, 중도인출(이하 “해지환급금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경우 갑은 고객에게 청구서류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를 안내하고, 실명확인을 한 후 완결된 청구서류를 접수한다.
- ② 갑은 서류 접수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고, 접수서류를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

게 전송하며 원본서류는 갑이 보관한다.

제30조 (보험계약대출금의 지급)

- ① 계약자가 갑에게 보험계약대출을 요청할 경우 갑은 전산시스템에 보험계약대출신청을 입력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이미지시스템에 스캔하여 을에게 전송하며 원본서류는 갑이 보관한다.
- ② 을은 갑이 전산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갑에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 ③ 갑은 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있을 경우 보험상품별로 대출이율에 차이가 있으며, 1계약당 보험계약 대출금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발생하며 대출금 지급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 (지급서비스시간)

제지급 요청업무는 갑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시간 이후에 요청된 건에 대하여는 익영업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안내문

제32조 (안내문)

- ① 을은 갑이 모집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이 모집한 계약에 대한 보험료미납해지 예고통지(실효예고통지), 보험료납입안내, 배당금 안내, 변액보험관련 안내, 갱신안내(손해보험만 해당) 등 각종 안내는 을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3조 (기타 안내)

을은 제32조 및 법규에서 정한 안내문 이외에 고객에게 안내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9장 민원

제34조 (민원의 접수)

- ① 갑과 을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완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판매 및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제도적 관리 감독을 이행한다.
- ② 본 판매제휴와 관련된 민원은 갑과 을이 각각 접수한다.
- ③ 민원을 접수한 일방은 민원이 접수된 즉시 팩스, 유선, 이미지스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민원인의 인적사항, 계약사항, 민원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민원의 처리)

- ① 계약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민원처리부서와 담당자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며 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호간 팩스, 유선, 이미지스캔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 ② 중대한 민원의 발생이나 발생빈도가 높은 민원사유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민원전담 부서 및 농축협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방안 및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장 기 타

제36조 (업무의 취소 또는 정정)

- ① 갑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에 대하여 갑은 당일 안에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며 익일부터는 을과의 협의를 거쳐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당일 신계약의 정정은 초회보험료의 입금정정에 의하며 익일부터는 청약철회 절차에 따르고, 계속보험료 입금 당일 정정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갑이 처리하며 익일부터는 을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7조 (상계 금지)

갑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38조 (부실모집의 책임)

-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이 부담한 모집수수료 등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동 보험계약 체결 및 취소 등에 따르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부실모집 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간접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갑이 보험계약 모집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갑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 ② 1항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보칙)

- ① 본 부속계약서는 2012년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부속계약서와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본계약서에 정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원본을 작성하고, 그 정당한 대표자가 본 계약에 각각 서명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 3. 2.

(갑) 주 소 : _____
농·축협 : _____
조 합 장 : _____ (인)

(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동 민



업무위수탁계약서

업무위수탁계약서

위탁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수탁자 : _____

업무위수탁계약서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12년 3월 2일 보험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하여 _____(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업무위수탁계약(이하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보험업무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의를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수탁업무의 범위)

위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주기, 내용, 형태 등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위수탁업무의 주기

-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시로 처리한다.

② 위수탁업무의 내용 및 형태

-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탁받는 업무는 위탁자의 보험업무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다.

1. 계좌이체 및 현금납입 등의 보험료 수납
2. 보험계약 관련 보험가입증서 및 보험료 거래장 발행
3. 만기보험금(사고보험금 제외), 해지환급금, 제지급금 등의 지급 대행
4. 사고보험금 청구 접수 및 접수증 발급 대행
5. 원천세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통보
6. 기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업무수행의 수단)

수탁자는 전산시스템 및 별도의 물리적 장소를 이용하여 본건 수탁업무를 처리하기로 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

- ① 위탁수수료란 위탁업무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위탁업무 범위의 변동, 대금지급 기간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위탁수수료의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률 및 기타사항 등(이하 '지급기준 등'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자가 별도로 전자문서 또는 공문을 발송하여 통지한다.
- ④ 지급기준 등의 변경사유 발생시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대표자 명의의 전자문서 또는 공문 발송으로 갈음한다.

제5조 (정보제공 책임)

- ① 수탁자는 본건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위탁자는 필요시 수탁자의 본 계약에 따른 수탁업무처리의 적정성, 본 계약상 의무이행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영업시간 중 본건 수탁업무 이행장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7조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수탁자가 본건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라 작성하거나 생성되는 위탁자에 관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를 가진다.

제8조 (위탁업무 수행시 수수되는 자금의 정산)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거나 위탁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지급금(보험금, 배당금, 환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위탁자에 대한 미지급 채권·채무계정으로 기표하고 익영업일에 이를 일괄정산한다.
- ② 수탁자는 위 ①항의 자금정산과 관련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위탁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시점 및 위탁자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지급금을 지급한 시점에 그 수령 및 지급의 효과는 수탁자에게도 미친다.
- ③ 수탁자가 위 ①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자금의 이자율 산정 및 기타 이자정산과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별도 협의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탁자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9조 (고객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공한 자료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보관하고, 수탁한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탁자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영업상의 비밀,

고객정보, 기타 회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문서보안, 시설보안, 전산보안 등 각종자료에 대한 보안 점검과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직원 포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 ⑤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책임한계)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비상계획)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건 위수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장애 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기로 한다.

제12조 (이해상충방지 등)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위탁을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해당 회사 및 임직원,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차단벽의 구축 및 내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 ① 위탁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면통지

로 본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건 계약 및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위탁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당국 검사 수용의무)

수탁자는 감독당국의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본건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 재위탁)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이는 본건 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 ② 수탁자가 위 ①항에 따라 위탁자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본건 수탁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3자가 본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행위로 본다.

제16조 (면책 및 손해배상)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그 대표, 임직원, 피고용인, 소속 보험설계사, 컨설턴트, 대리인, 계약자, 수급인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관계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된 경우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자를 면책시키는 한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 ①항 및 본 계약위반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간에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은 2012년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은 3년 단위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기타)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르고 일반 관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 원본을 작성하고, 그 정당한 대표자가 본 계약서에 각각 서명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 3. 2.

(위탁자)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동 민



(수탁자) 주 소 : _____
농·축협 : _____
조 합 장 : _____ (인)

업무협약서

업 무 협 약 서

갑 : _____

을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업무협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은 2012년 3월 2일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의 보험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갑이 을의 보험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갑이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주기, 내용, 형태 등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의 주기

-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갑은 수시로 처리한다.

② 업무의 내용 및 형태

- 갑이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을의 보험업무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2.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

3. 기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 (업무수행의 수단)

갑은 전산시스템 및 별도의 물리적 장소를 이용하여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다.

제4조 (협약수수료)

- ① 협약수수료란 갑의 수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업무범위의 변동, 대금지급 기간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협약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협약수수료의 지급기준, 지급기간, 지급률 및 기타사항 등(이하 '지급기준 등'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이 별도로 전자문서 또는 공문을 발송하여 통지한다.
- ④ 지급기준 등의 변경사유 발생시 갑과 을은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을의 대표자 명의의 전자문서 또는 공문 발송으로 갈음한다.

제5조 (정보제공 책임)

- ① 갑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을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을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② 갑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을은 필요시 갑의 본 협약에 따른 업무처리의 적정성, 본 협약상 의무 이행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갑에 대하여 관련자료,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의 영업시간 중 본건 업무의 이행장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은 을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7조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갑이 본 협약에 따른 업무의 처리에 따라 작성하거나 생성되는 을에

관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는 을이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를 가진다.

제8조 (수수되는 자금의 정산)

- ① 갑은 을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수납하거나 을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지급금(보험금, 배당금, 환급금 등), 보험계약대출금(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을 지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을에 대한 미지급 채권·채무계정으로 기표하고 익영업일에 이를 일괄정산한다.
- ② 갑은 위 ①항의 자금정산과 관련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갑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수령한 시점 및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제지급금 및 보험계약대출금을 지급한 시점에 그 수령 및 지급의 효과는 갑에게도 미친다.
- ③ 갑이 위 ①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자금의 이자율 산정 및 기타 이자정산과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을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별도 협의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갑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9조 (고객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갑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자료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보관하고, 수행하는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갑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을의 영업상의 비밀, 고객정보, 기타 회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문서보안, 시설보안, 전산보안 등 각종자료에 대한 보안 점검과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갑(직원 포함)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갑과 을은 별도 서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는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 ⑤ 을은 갑이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책임한계)

갑은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협약서 등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비상계획)

갑과 을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기로 한다.

제12조 (이해상충방지 등)

갑과 을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해당 회사 및 임직원,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차단 벽의 구축 및 내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기간 중이라도 서면통지로 본 협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건 협약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을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파괴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당국 검사 수용의무)

갑은 감독당국의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본 협약에 따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위탁금지)

- ① 갑은 을의 동의가 없이는 본건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 ② 갑이 위 ①항에 따라 을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갑은 제3자가 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갑의 행위로 본다.

제16조 (면책 및 손해배상)

- ① 갑과 을은 그 대표, 임직원, 피고용인, 소속 보험설계사, 컨설턴트, 대리인, 계약자, 수급인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본 협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관계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된 경우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자를 면책시키는 한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위 ①항 및 본 협약위반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간에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② 본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협약기간)

- ① 본 협약은 2012년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은 3년 단위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기타)

- ① 본 협약의 효력은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다.
- ② 본 협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결정되더라도 다른 조항들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르고 일반 관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협약서 원본을 작성하고, 그 정당한 대표자가 본 협약서에 각각 서명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 3. 2.

(갑) 주 소 : _____
농·축협 : _____
조 합 장 : _____ (인)

(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동 민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위탁약정서

본 위탁약정(이하 "본 약정")은 2012년 3월 2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위탁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2) 수탁자 : _____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체결된 판매제휴계약 및 부속계약, 업무위수탁계약, 업무협약(이하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그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자가 본건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위탁사무의 목적: 생명보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취급업무 위탁
- ② 위탁사무의 범위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업무 및 상품판매
 2. 보험업무의 일부 중 위탁한 업무
 3.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 등

- ③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험계약정보, 보험계약 대출관련 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이하 "본건 개인정보")를 본건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본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확약사항)

- ① 수탁자는 본 약정에 따른 본건 개인정보의 수탁처리에 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과 기술, 책임능력 등을 보유해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취급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 ②항 및 ③항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본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 ⑥ 수탁자는 위 ⑤항의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이를 위해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법령상 준수사항)

-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한다.
- ④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수탁자는 본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책임자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반납)

- ① 수탁자는 본건 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된 이후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건 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처리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본건 개인정보를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할 수 있다.
- ② 본건 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건 개인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본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간까지 별도로 보관하되 본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 ③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재위탁의 제한)

-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본건 개인정보 처리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와 재위탁의 범위, 목적 및 재수탁자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검토하여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수탁자는 위 ①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재수탁자로부터 위탁자가 정한 약속서를 징구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책 및 손해배상)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그 대표, 임직원, 피고용인, 소속 보험설계사, 컨설턴트, 대리인, 계약자, 수급인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본 약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관계자와 제3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된 경우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자를 면책시키는 한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 ①항 및 본 약정위반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 ① 본 약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건 계약이 해지·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까지 유효하다.
-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본 약정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본건 계약과의 일체성)

본 약정은 본건 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본건 계약의 위탁사무 목적과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본 약정의 제3조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정서 원본을 작성하고, 그 정당한 대표자가 본 약정서에 각각 서명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 3. 2.

(위탁자)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동 민



(수탁자) 주 소 : _____
농·축협 : _____
조 합 장 : _____ (인)